

수신 수신자참조  
(경유)

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알림

1.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486(2020.1.3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추진방안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(부서)에서는 불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내용 >

가. 물품 수의계약

-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므로 금액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

※ 근거 :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2호,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30조

나. 계약 사전절차

1) 계약심사 (계약심사과)

- 천재지변, 재해복구사업 등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계약심사 불필요 사항이므로 계약심사 제외

※ 근거 :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 제4조

2) 일상감사 (감사담당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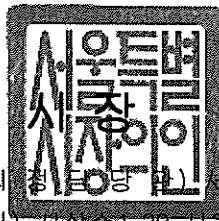
- 사안의 시급성으로 일상감사 한시적 제외

※ 근거 :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 관련 일상감사 대상 제외 알림」  
(감사담당관-2190호, 2020.1.30.)

불임 1. 행정안전부 공문 1부.
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관과01-165, 서사01-42,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의정담당관) 서사04-07(방재센터, 소방학교, 119 특수구조단, 청와대소방대), 서소1-24(24개소방서), 서장주1-39, 서울시출연기관, 서울시투자기관

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2/04 김명주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5384 ( 2020.2.4. ) 접수 보건의료정책과-4285 ( 2020.2.4. )  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/ www.seoul.go.kr  
전화 2133-3224 /전송 2133-1030 / 2012103146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

행정안전부

# 행정안전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

1.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, 중앙-지방의 적극적·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  2.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가능 사항을 안내하오니, 시·도에서는 필요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, 시·군·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, 「지방재정법」 제 43조에 의한 예비비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

※ 활용 예시

- ? 마스크, 손소독제 등 예방용품 재난취약계층 지원
- ? 다중공동이용시설(기차역, 지하철역, 전통시장 등) 방역소독 실시 등

- 나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제30조에 따라 진단시약, 소독제,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 계약 가능
- 다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3장 제2절 3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사 제외 가능. 끝.

## 행정안전부 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(예산담당관), 자치행정과장, 부산광역시(예산담당관), 대구광역시(예산담당관), 인천광역시(예산담당관), 광주광역시(예산담당관), 대전광역시(예산담당관), 울산광역시(예산담당관), 세종특별자치시(예산담당관), 경기도지사(예산담당관), 강원도지사(예산과장), 충청북도지사(예산담당관), 충청남도지사(예산담당관), 전라북도지사(예산과장), 전라남도지사(예산담당관), 경상북도지사(예산담당관), 경상남도지사(예산담당관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예산담당관)

주무관 이창일 행정사무관 장강혁 재정정책과장 전결 01/31  
이방무

협조자 행정사무관 최교신

시행 재정정책과-486 ( 2020.01.31. ) 접수 예산담당관-1252 ( 2020.1.31. )  
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(어진동, 행정안전부 별관) / <http://www.mois.go.kr>  
전화 044-205-3713 / 전송 044-204-8964 / [yahooundi@mail.go.kr](mailto:yahooundi@mail.go.kr) / 대시민공개

		시 민	
		계약전문관	계약총괄팀장
문서번호	재무과-5087	재무과장	재무국장
결재일자	2020. 1.31.	김명주	01/31 이병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      계약심사과장      代김형일 계약2팀장            이정렬 계약1팀장            조현 계약전문관            오선숙	
방침번호			

##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

2020. 1.

재 무 국  
(재 무 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 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의 사례 분석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제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홍보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 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#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

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’ 대응 마스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물품 구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□ 추진배경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, 열화상카메라 등의 수요 급증
- 이에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긴급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

◆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개요 (※ 1.31일 9시 기준)

- 국내 발생현황 : (확진환자) 7명, (유증상자) 298명
- 국외 발생현황 : (사 망 자) 213명, (확진환자) 9,805명

## □ 물품 수의계약 방안

- 대상물품 : 마스크, 열화상카메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
- 계약방법 : 1인견적 수의계약
  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제품을 신속 구매하여 긴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액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추진

※ 과거 메르스(중동호흡기증후군) 사태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6호에 근거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, 현재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품 수의계약 추진 근거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유선 협의함 (’20.1.31)

〈법적 근거〉

-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
  -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
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(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)  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계약 사전절차 제외 방안

○ 계약심사 (계약심사과)

-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계약심사 대상이나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천재지변, 재해복구사업 등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계약심사 불필요 사항이므로 대상에서 제외

〈법적 근거〉

-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
  -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4.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   - 나. 천재지변,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
    - 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일상감사 (감사담당관)

-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이나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구매 관련 사항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한시적 제외
- ※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 관련 일상감사 대상 제외 알림」  
(감사담당관-2190호, '20.1.30.)



**각 기관(부서) 추진사항**

○ **사업부서**

- 마스크, 손세정제, 열화상카메라 등 부서별 구매수요 발생 시 사전절차 (계약심사, 일상감사) 없이 계약부서로 계약의뢰

○ **계약부서** (사업소 계약부서 포함)

- 사업부서의 계약의뢰 문서 접수 시 지체 없이 계약체결

**향후 일정**

- **물품계약 추진방안 배포** : 즉시시행

**붙임 : 긴급한 재난복구 관련 규정 1부.**

## □ 지방계약법령

## 지방계약법 제9조(계약의 방법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(指名)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2.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

##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(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)

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
2.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,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
3. 방역,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
4.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
5. 구제역 방역,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□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

제4조(계약심사 제외사업)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4.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

나. 천재지변,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

다. 상품권, 종량제 규격봉투,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·구매 사업

라.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

마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

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